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수련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38

발의연월일: 2024. 5. 31.

발 의 자 : 이수련, 김지훈(국), 박은경,

한근수, 김지훈(민), 원주영,

정현미, 전혜연, 한송연,

박윤옥, 이경숙, 박경원

1. 제안 이유

남양주시 평생학습센터 사용료 등의 면제 및 감면 규정을 정비하여 교육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, 미시행 규정을 삭제하는 등 평생학습센터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가. 인권친화적 용어 정비 (안 제15조)
 - '소외계층' → '교육취약계층'
- 나. 무료 강좌의 유연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22조제2항)
- 다.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(안 제23조제1항)
- 라. 사용료 등의 면제 및 감면 대상 확대(안 제23조제1항제5호~제6호)
 - 다자녀가정 및 다문화가족 추가
- 마. 미시행 규정 폐지(안 제22조~제24조)
 - 유아 위탁료 관련 규정 폐지
 - 별표 3 삭제

- 3. 일부개정조례안 : 덧붙임
-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- 5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

6. 관련법령

- 가. 「평생교육법」
- 나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
- 다. 「저출산・고령사회기본법」
- 라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

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5조제4호 중 "소외계층"을 "교육취약계층 등"으로 한다. 제2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할수 있다.

제22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"을 "제22조제1항"으로, "각 호"를 "각 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1호 중 "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"을 "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"으로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5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5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5호 및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- 5. 「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

다자녀 가정

- 6. 「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
- ② 시장은 센터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등의 면제 및 감면 횟수나 금액 등에 대하여 제한을 둘 수 있다.

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또는 유아위탁 개시일"을 "개시일"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.

별표 3을 삭제하고, 별표 4를 별표 3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	제15조(기능)
의 기능을 수행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소외계층</u> 에 대한 평생학습	4. <u>교육취약계층 등</u>
진흥	
5. ~ 9. (생 략)	5. ~ 9. (현행과 같음)
제22조(사용료 등의 징수) ① (생	제22조(사용료 등의 징수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시장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각	2
종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	
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에 의	
한 교육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	
다. <u><단서 신설></u>	<u>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</u>
	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
	무료로 할 수 있다.
③시장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	<u> <삭 제></u>
육을 수강하는 자의 유아를 수	
탁하는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	
의한 유아 위탁료를 징수할 수	
있다. 이 경우, 유아에 대한 수	
탁사무는 남양주시 공립어린이	
집에서 행하도록 하고, 유아 위	
탁료는 남양주시 공립어린이집	
에서 징수하여 운영비로 사용할	

수 있다.

-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 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면제 할 수 있다.
 - 의한 수급권자
 - 2. 「모·부자복지법」에 의한 | 보호대상자
 - 3. 4.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5. (생략) <신 설>

략)

- 제23조(사용료 등의 면제) 제22조 제23조(사용료 등의 면제 및 감 면) ① 제22조제1항---------- 각 호-----
 - 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--
 - 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 른 지원대상자
 - 3. · 4. (현행과 같음)
 - 5. 「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
 - 6. 「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세2 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
 - 7. (현행 제5호와 같음)
 - ② 시장은 센터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등의 면제 및 감면 횟수나 금액 등에 대하여 제한을 둘 수 있다.
- 제24조(사용료 등의 반환) ① (생 제24조(사용료 등의 반환) ① (현 행과 같음)

-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생학습 시설의 사용, 교육수강 또는 유아위탁 개시일 이후 사용자 등이 시설의 사용 등을 취소 또는 중단하고 사용료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 등의 일부 를 반환할 수 있다.
- 1. 2. (생략)
- 3. 별표 3에 의한 유아 위탁료:
 위탁 개시일 및 위탁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.
 이 경우,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5천원으로 하되 셋째 주 이후에 위탁을 중단하는 때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

③ (생략)

2
<u> 개시일</u>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<삭 제>

③ (현행과 같음)

비용추계 관련자료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- 가. 자치법규안명
 -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
- 나. 재정 수반 요인
- 일부 강좌 무료에 따른 세입 영향
- 다자녀 가정 수강료 면제
- 다문화 가족 수강료 면제

2. 미 첨부 근거 규정

○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3. 미 첨부 사유

- 현행 남양주시 평생교육은 취·창업 교육을 제외하고는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, 다만 제22조에 무료조항을 명시하여 무료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실제 세입에는 영향이 미미함.
- 현행 평생교육진흥조례 제23조에 근거하여 수급권자, 한부모가정, 국가 유공자, 등록장애인 및 다자녀가정 등에 수강료 면제중인 바, 2023년도 총 832 건 4천4백만원(다자녀 646건 3천4백만)으로 총 비용이 1억 미만으로 집계됨
- 다문화가정이 평생학습센터 유료 강좌에 신청한 경우가 미미함(2023년도 기준 1건), 다만 행안부 등록된 2022년 기준 자녀 포함한 우리시 다문화 가구원 현황은 13,218명으로 다문화 가정 면제대상 추가시에도 소액으로 추산됨(※ 13.218명의 1% 수강시 130명×45.000원≒6백만원 / 남양주 평균 수강률 0.5%)

4. 작성자

문화교육국 미래교육과 이유미

관계법령

☑ 「평생교육법」

제4조(평생교육의 이념)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.

-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.
-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·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.
-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.

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·시설·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.
-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한다.

☑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

제4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모" 또는 "부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.
 - 가.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(遺棄)된 자
 - 나.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
- 다. 교정시설·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
 - 라. 미혼자{ 사실혼(事實婚)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}
 - 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

정하는 자

1의2. "청소년 한부모"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.

- 2. "한부모가족"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.
- 3. "모자가족"이란 모가 세대주{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(世代員)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}인 가족을 말한다.
- 4. "부자가족"이란 부가 세대주{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}인 가족을 말한다.
- 5. "아동"이란 18세 미만(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,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)의 자를 말한다.
- 6. "지원기관"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.
- 7. "한부모가족복지단체" 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.

제5조(지원대상자의 범위)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·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. 제5조의2(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)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.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.
 - 1.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
 - 2.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·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
 - 3.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
 - 4.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
-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
 -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

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.

☑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-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·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(이하 "이용권"이라 한다)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.
 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.
 -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(아동의 친권자·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·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)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.
 -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·금액·방법,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☑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다문화가족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.
- 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- 나. 「국적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- 2. "결혼이민자등"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- 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
 - 나. 「국적법」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
 - 3. "아동・청소년"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
제6조(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(아동·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)를 제공하고,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·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과 배우자 및 그 가족구성원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,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등의 가구소득수준, 교육의 종류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차등지원할 수 있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비용 지원의 신청, 금융정보 등의 제공, 조사·질문 등은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 - ⑥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등이 한국어교육

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⑦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